

조례안 · 일반의안 심사보고서



산업건설위원회

목 차

2	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	1
3	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	4
5	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7
7	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01
1	『위천119안전센터』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	B
4	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 동의안	61
6	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	19

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2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2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6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3.0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산림과장)

- 국내 3대 화강석 채석 산지인 거창군의 석재산업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 및 석재 채취업 및 가공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정함(안 제1조~제3조)
- 군수의 책무, 석재사업자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·제5조)
- 석재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을 정함(안 제6조)
- 재정지원을 정함(안 제7조)
 - 1) 석재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·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
 - 2) 석재산업에 따른 피해 예방 등을 위한 환경 개선

- 3) 석재사업장 시설 개선
- 4) 석재 및 석재제품의 채취·가공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
- 5) 쇄골재용(碎骨材用) 석재의 군외 운반
- 6)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 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 - 3) 「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3조
-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 100백만원 확보예정
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23. 01. 20. ~ 02. 09.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조례안은 국내 3대 화강석 주산지로서 석재산업의 재도약을 유도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2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2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6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3.0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산림과장)

- 생활 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민간정원 개방 등의 활동 장려, 시민정원사 육성 및 활용, 정원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)
-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을 정함(안 제4조)
 - 1)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, 정원문화 관련 교육,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등
 - 2)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장려활동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

- 정원산업의 육성 지원을 정함(안 제5조)
 - 1)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보급·관리, 기술지도 및 교육, 정보교류 및 협력,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등
 - 2) 정원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
- 시민정원사 육성 등을 정함(안 제6조)
- 정원 전문가와 시민정원사의 활용 지원을 정함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
 - 2)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 - 3)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6, 제18조의8
- 예산조치 : 2023년도 예산 20백만원 확보 예정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 : 2023. 02. 01. ~ 02. 20.
 - 예고결과 : 의견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조례안은 생활속 정원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민간정원 개방 등의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2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2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6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3.0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과장)

-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위촉위원 수를 확대함(안 제8조)
 - 1) 위원 수: 15명 이내 ⇒ 20명 이내
 - 2) 위촉위원 중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 대표: 2명 ⇒ 7명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을 신설함(안 제9조의2, 제9조의3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: 2023. 02. 03. ~ 02. 21.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
- 특히, 생산자 단체 및 출하농가 대표수를 확대하여 농가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**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7. **토론요지 : 없음**

8. **수정안 요지 : 없음**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**

거창군 체육시설 관리·운영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2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2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6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3.0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체육시설사업소장)

-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일 경우 수영장 사용료 등을 면제하여 어린이가 물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생존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어린이 수영교실 운영을 신설함(안 제3조의2)
 - 1)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존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 수영장 사용료 및 강습비 면제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1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
 - 2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
 - 3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·제28조·제156조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입법예고
 - 예고기간: 2023. 01. 20. ~ 02. 09.
 -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조례 개정안은 어린이 수영 교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미취학 어린이들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교육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료와 강습비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
-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**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7. **토론요지 : 없음**

8. **수정안 요지 : 없음**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**

『위천119안전센터』 증축에 따른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2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2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6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3.0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안전총괄과장)

- 위천119안전센터 증축에 포함되는 공유지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에 대하여 군의회의 심의·의결을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대상 공유재산 현황

재산 종별	소재지	소유자	지목	면적	공시지가	비고
토지	위천면 장기리 509	거창군	대	1,633㎡	60,200원 (2022년)	

- 영구시설물 축조 주체 : 경상남도(거창소방서)

- 축조목적 : 위천119안전센터 증축
- 준치기간 : 영구
-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
 - 합 의 자 : 경상남도지사(거창소방서) ⇔ 거창군수
- 증축규모 : 191.42㎡ / 지상 2층(1동) / 철근콘크리트조
- 사 업 비 : 금1,487,846천원(도비)

4. 참고사항

- 관련근거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 :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 : 영구시설물 축조 조건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: 사용료의 감면
-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동의안은 안전센터 소방 인력의 증가에(11명 → 28명)에 따른 부족한 시설물 등을 추가하기 위해 증축하는 것으로
- 경남도와 거창군 간의 합의가 있었으며, 원거리 사각지대 주민의 골든타임 확보 및 소방수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 : 없음

8. 수정안 요지 : 없음

9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10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1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민간 재위탁

동의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2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2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6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3.0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업축산과장)

- 거창군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탁자 재선정

3. 주요내용

○ 현 황

- 시설명 :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
- 위치 : 경남 거창군·읍 거함대로 3390
- 규모 : 건물 163.38㎡, 대지 3,013㎡

○ 위탁사무

- 시설운영 : 축산종합방역소 세척·소독시설 유지 및 관리
- 기타사항 : 그밖에 운영에 필요로 하는 사항

○ 운영계획

- 수탁자 : 거창군축산업협동조합
- 위탁기간 : 2023. 7. ~ 2028. 6.(5년 간)
- 위탁범위 : 축산종합방역소 시설물 유지·관리 등
- 소요예산 : 36,000천원(공공운영비 및 재료비 제외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, 제21조, 제24조, 제27조
- 「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제17조 및 제18조
-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 및 제6조
- 「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6조

○ 향후계획

- 2023. 5. : 민간위탁 갱신 신청(축협 → 군)
- 2023. 6. : 거창군 축산종합방역소 재협약(재위탁) 및 계약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“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“같은 기관에 재계약 할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동의안의 경우 기타 다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

6. **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7. **토론요지 : 없음**

8. **수정안 요지 : 없음**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**

거창한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
민간위탁 동의안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/ 제출자 : 2023. 02. 23. / 거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23. 02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269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(03.09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농업기술과장)

-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체, 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운영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시설 현황
 - 위탁시설 : 거창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/ 69.2m²
 - 위치 : 거창한휴게소 광주방향 사과전망대 1층
 - 시설내용 : 사과전망대, 진열대, 쇼케이스 등
 - 취급품목 : 사과, 사과즙, 잼 등 20개 정도
- 위탁기간 : 2023. 4. 3. ~ 2026. 4. 2. (3년간)
- 수탁대상 : 판매장 관리 및 업무 능력이 있는 법인
※ 현) (사)한국농업경영인 거창군연합회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5
 -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, 제9조
 -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
 - 한국도로공사⇔거창군⇔(사)한국농업경영인거창군연합회 거창한 휴게소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협약 제6조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전병준)

- 본 동의안은 민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「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르면 “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·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“같은 기관에 재계약 할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- 본 동의안의 경우 기타 다른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으나,
- 향후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전에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기 바람

6. **질의 및 답변 요지 : 회의록 참조**

7. **토론요지 : 없음**

8. **수정안 요지 : 없음**

9. **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

10. **소수의견 요지 : 없음**

11. **기타 필요한 사항**